

# 행 정 자 치 부

## 훈계·시정 요구

제 목 어류관리계획 미수립 등 어도 설치·관리 업무 소홀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경상남도 본청

관 련 자 경상남도 ○○○○과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5. 1. 12.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경상남도 ○○○○과에서 매년 어도수립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에 대한 어도 관련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6에 따라 하천의 물 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여야 하고, 어도를 설치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 어도를 정기적으로 개수·보수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또한 동법 제19조의3(어도 종합관리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 및 시군에서는 매년 어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상남도에서는 동 시설에 대하여 매년 어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설의 정상적 기능 유지 여부 등을 파악하는 등 시·군 담당부서에 대하여 지도·감독 업무를 하여야 한다.

경상남도(○○○○과)에는 683개의 하천이 있으며, 동 하천에는 수리시설물인 보시설이 6,740개소가 있으며, 동 보 시설에는 회유성 어류 이동통로인 어도 97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최근 3년간 23개소(2,250백만원)를 개보수 하였다.

그러나, 2016. 11 .28. 정부합동감사시 전 시·군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기존시설(보) 대다수에 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동일 하천·지류 입에도 어류 이동이 단절되는 등에 문제가 있으며, 홍수시 유입된 퇴적물과 세굴 등으로 단차가 발생되어 있고, 각 낙과 유목 등이 쌓여 있어 기능이 불량한 상태로 보수가 필요한 어도 146개소가 있다.

〈하천별 어도설치 현황, 2016. 11월 현재〉

구분	하천	보	어도 설치 현황			비고
			설치 어도수	정상	보수 요	
경남	683	6,740	973	827	146 (15%)	

또한, 보의 한 쪽에 웨어를 어도 높이 보다 낮게 설치하여 갈수기에 어도 기능이 상실되어 있고, 파손(102), 세굴(44) 등으로 어도 내로 흐르는 물을 차단하고 있는 등 어도 관리상태가 미흡하다.

〈어도형식 및 관리실태〉

어도 (개소)	표준형식		관리상태			불량유형			비고
	준수	비준수	양호	미흡	불량	파손	세굴	퇴적	
973	453	520	827	292	146	102	44	-	

아울러, 최근 3년간 3개 시·군에 설치된 23개 어도는 양호하게 설치하여 기능에는 문제가 없으나, 하천시설 재설치 또는 하천 하류보에 불량한 어도가 있음에도 상류부에 있는 어도를 설치·보수하여 어도간의 연결성이 단절되고 있어 물고기 이동통로 기능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어도 개보수 현황〉

합계	사천시	산청군	함양군	비고
23	1	20	2	-

위 내용과 같이 경남도(○○○○과)에서는 도내 하천시설물인 보시설에 어도 설치율이 저조하고 유지관리 실태에도 문제가 있었으며, 관련법에 따른 어도

설치기준은 있으나, 시·군 현장에서 직접 활용 할 수 있는 매뉴얼 또는 지침이 없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아울러, 경상남도 ○○○○과에서는 매년 수립하여야 하는 어도관리계획을 2014.8.6. 수립하였으나, 2015년과 2016년에는 어도종합관리계획을 수립 하지 않는 등 시도 지도·감독 업무 등 어도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경상남도지사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어도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건에 대하여는 파손 부위 복구 등의 조치를 조속히 실시하여 정상적으로 물고기가 이동 할 수 있도록 시정하시고

② 아울러, 어도 보수(신설)공사 추진시 물고기 이동이 단절이 되지 않도록 하천 하류에서 시작하여 상류보로 순차적으로 설치하시고, 매년 어도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시·군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철저히 하시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